

「환경성 석면노출과 건강문제」에 대한 토론문

한 상 운*

16)

석면은 자연계에서 섬유상 광물의 총칭으로 인장내력과 유연성이 뛰어나고, 불연성과 내마모성, 절연성 등의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80% 이상이 건축자재(슬레이트, 천장재, 벽체 등)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산업화 이후 대형 건물이 신축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기존 건물의 재건축 및 리모델링 시기가 도래하여 건축물 해체작업 시 근로자의 석면 노출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으며, ‘종합적인 축적오염’이라 일컬어지는 석면에 의한 손상은 20년에서 길게는 50년에 이르는 장기간 노출로 인한 질병인 폐암, 악성중피종(석면암), 석면폐로 인하여 석면에 대한 유해성평가와 관리기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발재자의 보고와 같이 정부와 관련부처는 피해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작년 7월에는 ‘석면종합대책’을, 올해 9월에는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5개년 대책’을 발표하여 석면정책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 할 국내 석면전문가와 분석기관 및 전문철거업체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처럼 현재 석면규제에 관해 노동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가 관련법규정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있지만 석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강력한 법규를 통해 석면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까지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발재자가 제안한 가칭 ‘석면특별법’제정과 국립석면센터건립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환경성 석면피해문제 해결 위해 우리나라보다 앞서 경험한 외국의 석면피해에 관한 관련 구제법제 및 정책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법·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즉 석면피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법학박사

해자 구제를 위한 기금설립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예로 프랑스의 경우 ‘2001년을 위한 사회보장재정법’ 제53조에 근거하여 석면피해보상기금(Le Found d'Indemnisation des Victimes de l'Amiante. FIVA)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재해보상이 인정되지 않는 환경노출에 의한 피해자까지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등은 석면건강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누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크게 얽매이지 않고 사회적 비용을 동원하여 석면건강피해를 구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프랑스, 일본 등과 같은 수준으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석면피해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고 그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자 구제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사회적 합의에 이룬다면 기금설립도 하나의 대안이 된다고 생각한다.